

제4장 결 론

- ‘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기반 구축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‘2022년도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’로부터 해당 기간 동안의 정보통신공사업 부문별 실태를 크게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음

1. 일반 현황

-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은 90.5%의 법인형태 공사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구내통신설비공사(28.0%)를 주요 사업분야로 하고 있음
- 공사업체의 36.5%가 소프트웨어사업(27.9%)을 주로 겸업하고 있으며 협력사 관계에서는 전체의 29.2%가 건설업체, 27.7%는 기간통신사업자와 협력사 관계를 맺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 중, KT가 14.6%로 가장 높음

2. 경영 환경

-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영 측면에서 31.4%가 수주활동이 가장 큰 시장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으며 자금조달은 은행(48.8%)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
- 최근 들어 시장 자금사정 악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공사수주 감소(39.4%)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공사수주 확대(37.2%) 환경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음
- 정보통신공사업의 경기에 대한 전망(향후 3년)은 악화세의 의견이 높았으며 이는 인건비, 자재비, 금융비용 등 비용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, 공공기관의 공사 발주 시 분리발주 준수(34.7%) 환경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

-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체와 시장경쟁 심화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폐이퍼 컴퍼니 방지(51.5%)를 위해 등록기준을 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능력(51.5%)에 대한 기준 정비(강화)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음

3. 운영 실태

- 업체의 정보통신공사업 운영에서 공사수주로는 52.2%가 일반경쟁입찰을 활용하여 수주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당 수주활동 시,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 수주 행태(40.6%)가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남
- 과당 경쟁 등에 따른 저가투찰 시도는 다수의 경쟁자로 인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로 활용(29.3%)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저가투찰 수주공사의 경우, 대부분 인건비를 절감(43.2%)하여 운영하고 있음
- 불안정한 인력고용의 경우, 젊은인력 공급 부족(28.4%)과 기술 또는 기능인력 부족(22.8%) 등을 가장 큰 영향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, 기술계 기술자 계층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것(41.8%)으로 나타나 개선을 위해서는 높은 임금 지급(27.0%)이 필요하다 지적하고 있음
- 부족한 인력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대체 활용을 일용근로자(48.3%)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절차에 대한 간소화(43.8%)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

4. 하도급 실태

-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하도급 실행가격은 80% ~89% 수준(32.4%)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치열한 수주경쟁(60.0%)으로 실행가격 미만의 저가수주를 시행하고 있음

- 이같은 저가하도급으로 인해 하도급업체의 경제적 손실(44.9%)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액 및 경비 부담(39.8%)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음
- 하도급 준공금(기성금)에 대한 지급은 기한 내에 적절하게 지급(63.2%) 받고 있으며 설계변경 또는 기타 조정사항 등을 반영한 계약(공사) 금액도 큰 문제없이 지급(46.9%) 받는 것으로 나타남
- 반면 하도급 환경에서 필요한 개선사항으로는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금액(64.9%)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액의 경우, 계약 시 감액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발주취소, 경세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감액(42.4%)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5. 제도 개선

- 다수의 중소기업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에서 중소기업 또는 공사업체 대상의 보호·육성 연관제도는 대체로 만족(보통: 36.9%, 만족:30.9%, 매우만족: 15.0%)하고 있으며 나아가 필요한 개선 사항으로 중소 공사업체의 수주기회 확대(63.1%)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
- 또한 분리발주제도를 통한 공사업체 보호·육성에 대해선 대체로 기능(보통: 30.9%, 그러함: 32.4%, 매우 그러함: 26.2%)하고 있으며 해당 분리발주제도에 대한 발주기관 및 민간발주자 대상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(45.5%)시킬 필요 있음으로 조사결과 나타남